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3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3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0,520,000원, 지방교육세 1,052,000원, 농어촌특별세 526,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31

가. 원고는 2015. 4. 28. A으로부터 [redacted]시 B 답 1,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잔금지급일인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억 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10,520,000원, 지방교육세 1,052,000원, 농어촌특별세 5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5. 6. 12.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11.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제3, 4호증, 5호증의 1, 8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인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31

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지방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위 제72조 제1항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11. 1. 1.부터는 더 이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이를 처분으로 보거나, 이후 별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을 뿐,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보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아닌, 원고의 2015. 5. 15.자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고납부행위를 피고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성이 없는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가 피고의 2015. 11. 11.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31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는지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급지급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의미하는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31

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31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끝.